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내용	승인번호 또는 허가·인가증 번호		승인·허가·인가일자
	변경사항		
	변경사유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15조·제20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39조의4·제42조·제44조·제45조·제51조·제53조·제60조·제63조·제68조의3·제68조의4·제69조·제76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 합니다.

이
의
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인가증(「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20조·제30조·제35조·제39조의4·제45조·제53조 및 제6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설계승인서(「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76조 및 제77조의2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15조·제20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39조의4·제42조·제44조·제63조·제68조의3·제68조의4 및 제69조에 따른 신고: 24개월 2.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51조·제53조·제60조·제76조 및 제77조의2에 따른 신고: 7일	

처리절차

신고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통보 → 결과확인
처리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신고인

처리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